
 ◆ 政府 施策 ◆

'94년도 中期거점 기술개발사업 과제 선정

— 商工部, 15개 核心技術 5년내 開發 —

상공자원부는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기 확보, UR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제철기술등 15개 핵심기술개발을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으로 확정, 금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확보해야 할 핵심기술군을 5년 내에 민관 공동으로 일괄개발키로 하고 우선 올해 공기반자금중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비 272억원과 공발금중 첨단산업 기술개발사업비 299억원 등 총 57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상공부가 올해 추진키로 확정한 중기거점기술은 그동안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정책과제 형식으로 추진돼 온 신제철기술, 소형가스터빈엔진, G4 팩스, 일렉트로-21 프로젝트, CATV 시스템, 대형컴퓨터, 디지털 이동통신기기등 7개 기술과제와 액정소자(LCD)기반기술, 멀티미디어 시스템, 제지설비 기술, 멀티미디어 시스템, 제지설비기술, 첨단염색가공기술, 화학공정기술, 선박용 항해통신장비, 반도체장비, 디지털 전자정보기술등 8개 신규과제를 포함, 총 15개 과제다.

이들 과제는 상공부가 종합적 산업기술개발 전략을 수립, 공업기반기술개발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연구관리 전담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사업별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 연구평가 및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각 사업별 연구주관기관은 개발사업의 연구기획과 참여기업간 이해를 조정하며 참여기업은 복합기술의 공동연구 및 단위기술의 분담개발을 담당한다.

상공부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5월중에 기술개발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同사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평가기법을 생산기술연구원 주관하에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에 공업기반기술개발 조정회의를 개최,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협의하는 등 이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거점 기술사업은 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한 교두보로써 전략적 확보가 시급한 핵심기술군을 5년 내외의 중기계획을 수립, 민관 공동으로 일괄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따라서 중기사업의 경우 산업기술 전문야를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향후 세계시장에서 상당수준의 시장점유가 가능한 주력산업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전에 국제 기술동향과 국내 개발능력 분석, 개발추진 체제등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 연구기획도 강화하기로 했다.

▲ 94년도 중기거점기술개발 추진사업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개발목표	개발기간	주관기관	'94지원
계	신제철 기술개발	신철강공정 및 고기능 강판 개발	'90.11~ '98.10	신철강연구조합	16
	산업용 소형가스터빈 엔진 개발	산업용 소형가스터빈 엔진의 독자모델 개발	'91.12~ '96.11	삼성항공	49
	G4 FAX 개발	ISDN 연동형 G4 FAX 시스템 및 부품 개발	'90.12~ '95.11	생산기술연구원	10
속	Electro-21 프로젝트	전자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92~'97	전자부품 연구소	200
과	CATV시스템 개발	동축전송방식의 디지털 시스템 및 부품 개발	'92.10~ '98.12	전자부품 연구소	16
	대형컴퓨터 개발	개방형 병렬처리 대형 컴퓨터 국산화	'93. 9~ '98.12	서울대 컴퓨터 연구소	10
제	디지털 이동통신기기 개발	디지털(TDMA) 이동통신 단말기, 핵심부품 개발	'93.12~ '97.11	전자부품 연구소	66
소 계					367

구분	사업명	개발목표	개발기간	주관기관	'94지원
신 규 과 제	액정소자(LCD) 기반기술 개발	대화면 박막 LCD 개발	'94. 5~ '98. 4	디스플레이 연구조합	33
	멀티미디어 시스템개발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일괄 개발	'94. 5~ '99. 4	전자부품연구소	4
	제지설비 기술개발	고속제지 가공시스템 개발	'94. 5~ '99. 4	생산기술연구원	15
	첨단염색가공 기술개발	21세기형 첨단 염색 가공기술 개발	'94. 5~ '99. 4	생산기술연구원	18
	화학공정 기술개발	신축매 및 실용화 공정 기술개발	'94. 5~ '99. 4	생산기술연구원	14
	선박용 항해·통신장비 개발	조선기자재 국산화율 95% 달성	'94.10~ '99. 9	추후 선정	20
	반도체 장비 국산화 개발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 50% 달성	'94.10~ '99. 9	추후 선정	50
	디지털 종합전자정보 기술개발	디지털 VCR, 캠코더, VDR, 오디오 등 개발	'94.10~ '99. 9	추후 선정	50
소 계					204
합 계					571

* '94 지원금액은 추정치로서 사업계획서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임.

우리상표는 우리기술 밝아지는 우리경제

유망 先進技術企業 지정

— 商工部, 종합적 기술지도 · 정보제공등 우대支援 —

상공자원부는 92개 유망선진기술기업을 추가로 지정, 발표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92개 업체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공진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생산기술연구원에 신청한 160개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 및 정밀진단을 실시해 매출액의 3%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등 기본요건을 갖춘 업체들을 선정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기계부문이 44개 업체, 전기·전자부문이 22개 업체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이들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기타업종으로는 섬유·화학이 18개 업체, 금속 및 기타가 8개 업체로 나타났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공업진흥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등 3개 발굴기관을 포함한 42개 중소기업 기술지도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업체당 연간 평균 30~60일 정도의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정보원의 산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관련정보의 제공, 병역특례기업 선정 추천, 단체수의계약 물량배분시 우대조치등의 지원을 받게된다.

상공부는 지난 90년도부터 유망중소기업중 기술력향상에 주력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작년말까지 457개 업체가 지정됐다.

■ '94 유망선진 기술기업 (전기관련 분야)

업 체 명	대 표 자	발 굴 기 관
삼진 변압기	김 문 환	공업진흥청
동진 모타공업사	이 수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동우 전기공업(주)	김 연 수	"
태일 전기	박 성 태	생산기술연구원
화승 전기	이 원 종	"
성화 전기	김 진 종	"

에너지이용 合理化 資金支援 擴大

— 商工部, 지원규모 · 용자한도 상향조정 —

정부는 에너지절약투자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대한 94년도 저리용자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공자원부는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1956억원보다 190억원이 늘어난 2146억원으로 확대하고 추가 조성된 자금을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은 산업체 열병합 발전사업에 집중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지침을 개정 공고했다.

개정된 지원지침에 따르면 산업체의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체 절약시설자금에 별도항목으로 150억원을 확보, 지원하는 한편 용자한도도 당초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신도시 지역난방사업에도 40억원을 증액 지원키로 했다.

작년말 현재 국내 열병합발전소는 지역 난방 10개소(243만KW), 공업단지 8개소(44만3천KW), 건물열병합 7개소(5만1천KW) 등 총 78개소(394만1천KW)로 93년도 총 발전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실적은 4월말 현재 91건에 690억원(용자추천액 기준)으로 총 지원액의 32%를 소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中企 協同組合 분할기준 緩和

— 商工部, 시행령개정 5월 23일부터 시행 —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분할가능 기준을 완화, 조합기능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특별조합원 자격규정을 신설, 조합원 자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상공자원부는 작년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 공고하고 5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분할가능기준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세번분류기준으로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특별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관련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했다.

이 시행령은 또 중소기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을 공제금 대출액의 10분의 1 이내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해 운용토록 했다.

이 준비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를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에 따른 대손을 보전하기 위해 이 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부터 받아 적립하는 자금이다.

2만弗 이하 輸出 승인 免除

— 商工部, 대외무역관련규정개정 輸出 절차 간소화 —

건당 2만달러 이하의 일람불 LC방식 수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수출승인 면제가 거래방식에 관계 없이 건당 2만달러 이하의 모든 자동승인품목으로 확대 적용되고 일람불 LC방식에 의한 수출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출승인이 면제된다. 또 현행 5천달러 이하로 돼있는 수출입 승인 사후관리 면제범위를 1만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가 발표한 일반산업분야 규제 완화추진계획에 따르면 상공부는 수출절차 간소화를 통한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중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 건당 2만달러 이하의 자동승인품목에 대해서는 거래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수출승인을 면제,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그동안 2만달러 이하에 대해서만 수출승인이 면제됐던 일람불화환신용장에 의한 수출거래는 금액에 관계없이 승인을 면제함으로써 소액수출승인면제 한도 자체를 폐지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올 하반기중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 수출입승인 사후관리 면제범위도 현행 5천달러 이하에서 최소한 1만달러 이하로 까지 확대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수출업체들이 사후관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중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동일 품목의 수출건수가 연간 100건을 넘는 업체에 한 해 실시하고 있는 현행 포괄수출승인 요건을 대폭 완화, 동일품목의 연간수출건수가 50건 이상인 업체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현행 대외무역 관리규정에서는 수·위탁판매 수출입승인을 받은 물품이 일정판매 기간내에 판매되지 않은 경우 수출입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출 또는 재수입하도록 돼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수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 수출입이행 기간을 6개월로 연장,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또 산업설비 수출시 소요 기자재를 본국 또는 제3국에서는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지조달은 못하도록 돼있는 대외무역관리 규정상의 불합리한 점을 상반기중에 개정, 소요 기자재의 현지조달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대외무역법상 등록제로 돼있는 갑류무역대리업을 금년중 신고제로 전환, 신규업체의 참여 문호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올 12월 수입선 다변화품목 공고에서는 수요가 적은 연구장비의 경우 가급적 다변화품목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수입선다변화 품목중 민간연구소 및 공공기관의 시험연구재료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추천한 품목은 수입이 가능하지만 연구장비는 그동안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상공부는 이밖에도 그동안 유명무실한 제도로써 실효성이 의문시 돼왔던 산업설비 수출기금출연제도를 하반기중에 폐지하기로 했다.

또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시 가소요량 증명발급을 위한 소요량 책정기준을 사업자의 신고내역에 의하도록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명문화함으로써 가소요량 증명서 발급에 따른 업계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하반기 中小企業 기본법등 8개법률 5개로 단순화

— 商工部, 중소기업 관계법 전면改編 —

정부는 종업원수나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라 해도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범주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자의 졸업제도를 대폭 강화, 중소기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선 경우 적용하고 있는 3년간의 졸업 유예기간을 단 1회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맞춰 중소기업이 자유투쟁기반위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관계법을 하반기중 전면 개정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공부는 이를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한 현행 8개 법률을 기본법과 창업지원법,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등 5개 법률로 단순화키로 하고 작년 12월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제외한 현행 7개 법률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이 시안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시안에 따르면 개정 중소기업법에서는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 종업원수나 자산총액규모에 의한 양적인 개념에다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하여 소유하고 경영하는 자라는 질적인 개념을 도입, 대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자가 대기업과 합병 이외의 사유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선 경우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로 간주해 주던 졸업유예제도는 그대로 두되 이를 1회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확대발전 경영전략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근거 및 동 센터 사업자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규정을 신설했으며 중소기업 창업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기업활동규제 완화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기술집약형이 아닌 경우도 농어촌 이외지역에서 사업계획승인제도를 준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법 개정예 반영, 농어촌 이외지역 및 수도권지역에서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업종을 기술집약형 업종에서 모든 제조업종으로 확대했다.

기존 중소기업진흥법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통합한 개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통합한 개정 중소기업진흥법은 국내외 중소기업 전반에 관한 체계적 조사,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용규정과 중소기업 정보은행, 자동화센터등의 설립 근거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신설될 정책연구원은 현재 기협중앙회의 중소기업연구원을 확대 개편하거나 아예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기존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과 중소기업 사업조정법을 통합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계열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연하는 계열화진흥기금 조성 및 기금관리를 위한 계열화진흥협회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 사업활동기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사업조정제도의 민간자율조정 절차 및 조사신청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조정의 기간도 1년 이내에서 3년이내로 연장했다.

KS 許可制度 대폭 改善

— 工振廳, 심사·사후관리제등 강화 7월부터 시행 —

공진청은 KS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KS표시 허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법령 정비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진청에 따르면 지난 92년 KS표시 허가제도가 완화된 이후 KS제품의 품질불량 증가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KS심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비, KS업체의 사내표준 및 품질관리체제를 강화하며 KS행정을 현지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구체적으로 현재 대기업·중소기업·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표준화 및 품질관리상태의 유지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만 KS표시 허가를 줄 계획이다.

또한 형식보다 실천위주의 심사체제 중심으로 심사기준을 대폭 개정하고 환경관리 및 사내표준의 실행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환경관리 부적절 업체는 KS를 불허할 방침이다.

공장심사 면제제도도 개선하여 ISO9000 인증획득 공장의 KS표시허가 공장이 기허가된 품목과 공정등이 전혀 다른 이종제품의 KS표시허가를 추가신청할 경우에 종전과 달리 공장심사를 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KS공장 특별검사도 현재는 정부기관·소비자단체등의 이의제기등 일부의 경우에만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생산중단시, 양도·양수, 시설의 확충·축소·개체시에도 실시할 계획이다.

품질취약·안전위해 품목에 대해서는 KS표시 허가공장을 A·B·C급으로 구분하고 C급은 1년에 2회 이상, B급은 1년에 1회, A급은 2년에 1회 정도 차등 공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장검사 기준도 지금까지는 품질특성과 관계되는 10개 항목만 조사하였으나 앞으로는 허가당시 요건인 30개 전항목에 대해 KS 최초 공장심사와 같이 철저히 조사토록 하는 한편 품질관리상태 및 제품품질 처리요건도 강화, 종전에 50점 미만의 경우에만 KS를 취소하던 것을 6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KS표시허가 신청절차 및 서류도 대폭 간소화, KS표시허가 신청시 신청서외에 첨부하는 4종의 첨부서류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며 신청서 내용을 전산입력하여 KS 공장 관리기록부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방화시대에 대비, KS행정의 현지화를 위해 ISO 9000 인증획득공장이 KS허가 신청을 할 경우 지방공업기술원에 신청토록하고 향후 지방공업기술원의 인력과 시설이 보강되는 시점부터 KS표시허가 행정을 각 지방공업기술원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현재 18개 KS업체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KS제품의 시판품조사도 강화하여 연 2회이상 실시토록 하며 사후관리가 부실한 협의회는 사후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밖에 품질 및 공장관리 상태가 우수한 자동화 시범공장, 기술지도 선도기업, ISO 9000 인증획득 공장, 불량률 100PPM 달성공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는 면제하여 KS 모범공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KS표시허가 공장은 지난 92년 9월 심사기준의 완화이후 계속 증가하여 4월말 현재 4056개에 달하고 있다.

延拂수출입 7개 類型 자유화

— 財務部, 6월 外換制度개혁에 반영 —

6월부터 有望중소기업의 延支給 수입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또 수출업체가 輸出先受金を 받더라도 해외에 예치할 경우 수출선수금 한도(3-10%)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출입관련 수수료지급시 韓銀허가면제대상이 현재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財務部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시행하면서 수출입결제 조건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

재무부는 우선 현재 60일(일반제) 및 120일(수출용원자제)로 제한하고 있는 延支給 수입기간을 제조업체인 유망중소기업의 일반제 수입중 해외수출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경우(Shipper's Usance)에 한해 90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수출업체가 선적전에 수출선수금을 받을 경우 선수금 영수한도를 기업규모별로 3-10%로 제한하고 있으나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은행 海外支店에 예치하는 경우는 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한 무역업체가 수출입결제조건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韓銀의 허가가 필요한 21개 거래유형중 5개 유형을 은행인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출입결제시 이용이 새로 가능해진 것은 ▲결제기간이 선적(환어음일람) 후 3년 초과하는 DA(引受度) 거래로써 지급보증이 있는 연불수출 ▲무보증의 10만달러 이하 LC(신용장)방식, DA방식 연불수출로써 3년 초과하는 경우 ▲국제팩토링을 이용한 10만달러 이하의 DA방식 또는 송금방식 수출로써 결제기간이 3년초과하는 경우 ▲LC방식 또는 송금방식의 수입으로써 선적서류(물품) 영수후 36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환급보증이 없는 경우(10만달러 이하) ▲성능확인후 수입대금 잔액을 지급하는 10만달러 이하 수입중 수입대금잔액이 2%초과하거나 지급시점이 360일 초과하는 경우등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은행의 인증이 면제되는 ▲DA방식 연불수출기간을 2년 이하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팩토링을 이용한 DA방식 또는 송금방식 수출기간은 1년 이하에서 3년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수출입 관련 수수료 지급시의 韓銀허가 면제범위를 '수출입대금의 10%-10만달러 이하'에서 '수출입대금의 10%-20만달러 이하'로 확대키로 하는 한편 수출착수금의 영수기준을 현행 제작공정에서 제작기간으로 전환키로 했다.

中企연구소 專門大卒 연구원 인정

- 技術開發 준비금 신고 간소화 -

국산 신기술제품의 제조자에 대한 자금지원의 종류가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4종류가 추가돼 현재의 10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원 자격요건이 전문대졸 이상으로 완화돼 중소기업이 전문대 졸업생을 연구인력으로 채용할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연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연구원 자격요건을 자연계 학사 이상에서 전문대졸 이상이나 기사 2급 자격취득자중 경력 2년 소지자로 완화.
- △ 기업이 과학기술처와 관할세무서에 이중으로 신고해온 조세감면과 관련된 기술개발준비금 신고 (93년 2962억)를 앞으로는 관할세무서에만 신고토록 간소화.
- △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대상기관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영리추구법인을 추가해 기술개발 준비적립 대상업종으로 인정.
- △ 지금까지 과학기술처에 기술수출신고를 하도록 해온 것을 앞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해 기술수출을 원활히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정연구개발사업관리를 보강해 연구개발계획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 △ 국산 신기술제품 제조자에 대한 지원조치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절차에 의거 이해 당사자에게 반드시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토록.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으로 지정.

◆ 國內外 情報 ◆

日 關西電力, 配電설비 購入

— 美 · 加 20개사서 20억엔 상당 —

일본의 關西電力은 94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변압기·송전선등 配電관련설비를 미국과 캐나다의 전력설비메이커 20개사로 부터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關西電力의 배전설비 해외조달액은 93년도의 2억엔에서 20억엔 수준으로 크게 팽창할 전망이고 동사가 거래하는 해외메이커도 종전의 20개사에서 2배인 40개사로 불어나게 된다.

구입할 자재 가운데는 지금까지 일본 국내메이커가 100% 공급해온 전선도 포함되어 있는등 엔高 정착으로 동사의 해외조달에도 이제 탄력이 붙고 있다.